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4-149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기금 존속기한 도래(2024. 12. 31.) 및 지원 신청자 부재로 인해 존치 실효성이 없는 기금을 폐지하고 잔여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사유 첨부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4. 10. 10. ~ 10. 30.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 없음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5) 제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원안의결(2024. 11. 6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발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의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에
해당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폐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 : 교통건설국 보행행정과 김석빈 (☎ 3153-9723)